



Mercedes-Benz
Financial Services

수수료 부과 및 감면기준_고객용

수수료 부과 및 감면 기준 (고객용)

2020년 9월 1일 기준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주)



Contents

1. **범위**

2. **수수료 부과 및 감면 기준**
 - 2.1. 할부금융 계약의 중도상환(해지) 수수료
 - 2.2. 리스계약의 중도해지손해배상금, 규정손해배상금
 - 2.3. 중도상환(해지) 수수료, 중도해지손해배상금, 규정손해배상금
- 신차대차 금융계약시
 - 2.4. 일부상환 수수료
 - 2.5. 승계수수료



수수료 부과 및 감면기준_고객용

1. 범위

적용시기	2020. 5. 1 일 부터 적용
금융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할부금융▪ 금융리스▪ 운용리스
이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도상환▪ 일부상환▪ 승계



수수료 부과 및 감면기준_고객용

2. 수수료 부과 및 감면 기준

2.1 할부금융계약의 중도상환(해지) 수수료

할부금융 - 승용차 (Passenger Car)		
계약기간	실행일	2013년 7월 1일 부터 ~ 2015년 1월 1일 부터~
실행 후 6개월미만	미회수원금의 4%	만기 1년이상인 경우 미회수원금 x 1% + 미회수원금 x (*수수료율 - 1%) x [잔존기간 / (대출기간 - 30 일)] 만기 1년미만인 경우 미회수원금 x (*수수료율) x [잔존기간 / (대출기간 - 30 일)] * 수수료율 2%
실행 후 6개월부터 12개월 미만	미회수원금의 3%	
실행 후 12개월부터 24개월미만	미회수원금의 2%	
실행 후 24개월이상	미회수원금의 1%	
만기 4회 이내	잔여기간이자	

* 2015년 1월 1일 이후 계약의 경우, 30일 이내 상환시, 대출기간을 30일로 간주한다.

- 승용차 할부금융계약 (~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행계약)

할부금융계약 - 승용차	
만기 4회 초과기간	미회수원금의 2%
만기 4회 이내기간	잔여기간이자

- 승용차 할부금융계약 (2015년 1월 1일부터 실행계약)

할부금융계약 - 승용차	
만기 1년이상 계약	미회수원금 * 1% + 미회수원금 * 1% x [남은계약일수 / (대출기간 - 30 일)]
만기 1년미만 계약	미회수원금 * 2% x [남은계약일수 / (대출기간 - 30 일)]

* 2015년 1월 1일 이후 계약의 경우, 30일 이내 상환시, 대출기간을 30일로 간주한다.



수수료 부과 및 감면기준_고객용

2.2. 리스계약의 중도해지손해배상금 및 규정손해배상금 부과 기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실행된 금융리스>

금융리스 - 승용차	
만기 6회 초과기간	미회수원금의 10%
만기 6회 이내기간	잔여기간 이자

*2019년 11월 1일 이후 실행 계약의 수수료 부과 기준과 비교하여 더 적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실행된 금융리스 계약>

- 2015년 1월 1일 이후 승계된 금융리스 계약의 경우에는 승계일자를 규정손실금산정 기준이 되는 계약실행일자로 간주한다.
-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실행된 금융리스 계약이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승계되었을 경우에는, 2015년 1월 1일 이후의 규정손실금 계산식과 잔여이자의 총액 중 작은 금액으로 정한다.

금융리스 - 승용차
$\text{미회수원금} \times \text{*수수료율}$
$\text{*수수료율} : 2.0\%$

*2019년 11월 1일 이후 실행 계약의 수수료 부과 기준과 비교하여 더 적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운용리스 중도해지 수수료 및 규정손실금 - 2019년 11월 01일 이전계약>

운용리스 - 승용차		
중도해지수수료 (차량반납 선택시)	계약실행 후 1년미만 해지	차량가격의 40%
	계약실행 후 1년이상 2년미만 해지	차량가격의 30%
	계약실행 후 2년이상	차량가격의 20%
규정손실금 (차량양수 선택시)	만기 4회 초과기간	미회수원금의 10%
	만기 4회 이내기간	잔여기간 이자

*2019년 11월 1일 이후 실행 계약의 수수료 부과 기준과 비교하여 더 적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수수료 부과 및 감면기준_고객용

<2019년 11월 1일 이후 실행된 리스계약>

- 2019년 11월 1일 이후 승계된 리스 계약의 경우에는 승계일자를 중도해지손해배상금과 규정손해배상금산정 기준이 되는 계약실행일자로 간주한다.
- 운용리스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은 최초계약에 따른 잔여리스료의 합계금액 이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 규정손해배상금과 미회수원금의 합계 금액은 최초 계약에 따른 잔여리스료와 잔존가치의 합계금액 이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금융리스 - 승용차	
미회수원금 × 2% × (잔여개월수 / 전체개월수)	

운용리스 - 승용차	
중도해지손해배상금 (차량반납 선택시)	미회수원금 × 중도해지손해배상금율(40%) × (잔여개월수 / 전체개월수)
규정손해배상금 (차량양수 선택시)	미회수원금 × 규정손해배상금율(15%) × (잔여개월수 / 전체개월수)

기타사항

- 계약자가 계약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인이 사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사망자의 채무를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규정)
- 무이자할부금융상품의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수수료 부과 및 감면기준_고객용

2.3. 중도상환 (해지) 수수료 및 규정손해배상금 - 신차대차 금융계약시

2.3.1 일반상품에 의한 신차대차금융

할부금융 / 금융리스			
실행일자 계약기간	~ 2013년 6월 31일 까지	2013년 7월 1일부터	2015년 1월 1일부터
실행 후 6개월미만	미회수원금의 4%	미회수원금의 4%	할부금융 ➤ 2.1 할부금융계약의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기준을 따름 금융리스 ➤ 2.2 리스계약의 중도해지손해배상금 및 규정손해배상금 부과기준을 따름
실행 후 6개월부터 12개월 미만		미회수원금의 3%	
실행 후 12개월부터 24개월미만	미회수원금의 2%	미회수원금의 2%	
실행 후 24개월이상	미회수원금의 1%	미회수원금의 1%	
만기 4회 이내	잔여기간이자	잔여기간이자	

* 2015년 1월 1일 이후 계약의 경우, 30일 미만 상환시, 대출기간을 30일로 간주합니다.

운용리스	
계약실행 후 1년 미만	미회수원금의 6%
계약실행 후 1년이상 2년미만	미회수원금의 4%
계약실행 후 2년이상 3년미만	미회수원금의 3%
계약실행 후 3년이상	미회수원금의 2%
만기 4회 이내	잔여기간이자

*2019년 11월 1일 이후 계약의 경우에도, 미회수원금의 10%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수수료 부과 및 감면기준_고객용

기타 사항

2.3 에 정의된 “신차대차 금융계약시”는 기존 계약자가 새로운 금융계약으로 신차를 추가 구매한 경우, 새로운 금융계약실행일 기준으로 전후 3 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기존계약을 승계받은 자(중고차매매상을 포함)가 기존계약을 중도상환(해지)할 때 적용된다(운용리스상품의 경우 양수선택시에만 적용). 새로운 금융계약실행일로부터 3 개월이 초과하면 2.2 에 정의된 중도상환(해지)수수료 또는 규정손해배상금이 적용된다.

만약, 신규계약이 실행되기 전에 기존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규계약 실행이 확인된 후 (기존계약 종료일 이후 3 개월이내)에 중도해지손해배상금/규정손해배상금을 정산(환불)한다.

2.3.2 키투키(Key2Key) 프로그램에 의한 신차대차금융

고객이 Key2Key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차를 구매하였을 경우, 기존계약의 중도해지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기존계약은 스타클래스 딜러가 승계하고, 승계받은 계약을 스타클래스 딜러가 중도해지 하는 경우, 중도해지에 의한 수수료는 감면된다.

추가적으로, 기존계약을 스타클래스 딜러로 승계하는 경우 발생하는 승계수수료에 대해서도 키투키(Key2Key)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승계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3.3 조인트 리텐션(Joint Retention) 프로그램에 의한 신차대차금융

고객이 조인트 리텐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차를 구매하고, 기존계약을 계약만기 일자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에 의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리스상품의 경우 양수에 의한 규정손해배상금에 한함)



수수료 부과 및 감면기준_고객용

2.4. 일부상환수수료

할부금융 - 상용차
2.1 할부금융계약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준 적용
할부금융 - 승용차
2.1 할부금융계약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준 적용
금융리스
2.2. 리스계약의 중도해지손해배상금, 규정손해배상금 부과기준 적용
운용리스
해당사항 없음 (원금 일부 상환 불가)



2.5. 승계 수수료

할부금융
<p>1. 승용차 : 승계진행 불가</p> <p>1.1 예외진행 가능 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이 폐업하는 경우 계약자 변경■ 법인이 인수 합병되는 경우 계약자 변경■ 법인의 보증인이 법인대표 였으나 법인대표가 변경되는 경우 보증인 변경 <p>1.2 예외진행 시 승계 수수료</p> <p>미회수원금 X 2% X (잔여개월수/전체개월수)</p> <p>최소 승계 수수료: 90,000 원</p> <p>최대 승계 수수료: 1,000,000 원</p> <p>A. 계약자 사망 시</p> <p>상속인으로만 변경가능 (증빙서류 첨부 필수)</p> <p>B. 계약자 사망 시 승계 수수료</p> <p>사망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승계 시 수수료 면제, 3 개월 이후 승계 시 90,000 원</p> <p>2. 상용차 승계 수수료</p> <p>미회수원금 X 2% X (잔여개월수/전체개월수)</p> <p>최소 승계 수수료: 90,000 원</p> <p>최대 승계 수수료: 1,000,000 원</p>



수수료 부과 및 감면기준_고객용

금융리스
<p>1. 승계 수수료</p> <p>미회수원금 X 2% X (잔여개월수/전체개월수)</p> <p>최소 승계 수수료: 90,000 원</p> <p>최대 승계 수수료: 1,000,000 원</p> <p>2. 단순 승계</p> <p>2.1 단순 승계 가능 조건(증빙서류 첨부 필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업직원이 승계 받는 경우,■ 계약자 사망 시 상속인으로 승계 <p>A. 단순 승계 수수료</p> <p>영업직원 승계시: 90,000 원</p> <p>- 사망자 승계시: 사망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승계 시 수수료 면제, 3 개월 이후 승계 시 90,000 원</p>

운용리스
<p>1. 승계 수수료</p> <p>미회수원금 X 2% X (잔여개월수/전체개월수)</p> <p>최소 승계 수수료: 400,000 원</p> <p>최대 승계 수수료: 2,000,000 원</p> <p>2. 단순 승계</p> <p>2.1 단순 승계 가능 조건(증빙서류 첨부 필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업직원이 승계 받는 경우■ 계약자 사망 시 상속인으로 승계 <p>A. 단순 승계 수수료</p> <p>영업직원 승계시: 200,000 원</p> <p>- 사망자 승계시: 사망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승계 시 수수료 면제, 3 개월 이후 승계 시 200,000 원</p>



수수료 부과 및 감면기준_고객용

기타사항

계약의 승계는 금융계약에 최소 한번 이상의 월납입액이 남아있어야 가능하다. 즉, 월납입회차가 남아있지 않은 금융계약은 승계가 불가능하다.

계약자가 계약기간중에 사망했을 경우, 사망일자 이후 3 개월 이내에 계약이 승계될 경우에는 승계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기타 - 수수료 감면대상 조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감면이 적용될 수 있다.

1. 계약기간 중 계약이 종료되고, 종료일 기준 전후 3 개월 이내에 새로운 금융계약이 실행되었을 경우, 감면된 수수료가 부과된다. 신규금융계약이 실행되기전 수수료가 납부되었을 경우에는 신규금융계약 확인 후에 환불한다.
2. 자연재해 또는 고객과실 50% 미만의 사고로 인한 전손의 경우, 기초 수익율(IRR) 을 충족시키는 중도상환(해지)수수료 또는 규정손해배상금이 부과된다.
3. 리스계약은 고객무과실(0%)의 사고로 인한 전손의 경우 2018 년 7 월 2 일부터 실행된 계약은 규정손해배상금을 전액 면제하며, 2018 년 7 월 1 일까지 계약은 2 번항 내용으로 적용된다.